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상 이 기 장 령 전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섭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이기장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인 등에 대한 상이기장 제도가 있으나, 수여대상의 기준 모호, 신청 절차의 현실성 미흡 등으로 인해 해당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기장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법규 정비를 통해 부상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기장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법령명을 「상이기장령」에서 「헌신영예기장령」으로 개정

나. 기장 수여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종류를 개선(제1조)

- 1)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에서 작전의 범위가 모호하여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를 준용한 전투 또는 특수직무에 해당되는 직무수행”으로 개정하여 수여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 적과의 교전(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
- ‘특수직무공상’에 해당하는 직무(17개 유형) 수행

- 2) 상이기장 종류를 특별·보통상이기장 2종류에서 1종류로 단일화
다. 단일화된 기장에 대한 정장 제식을 개선하고, 사복에 패용이 가능한 약장 제식을 신설(별표)

라.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용어 수정 및 오자(誤字) 수정(제1,5,6,7조)

- 1) “제1조(수요대상 ~)”을 “제2조(수여대상 등)”으로 수정

- 2) “경찰관 기타 문관과 일반인”을 “군인, 군무원 또는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수정(제 5조)
- 3) “사후에는 그 유족이”를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로 수정(제 7조)
- 4) 제목이 동일한 “제6조”와 “제7조”는 통합하여 “제6조” 내용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상이기장령 전부개정령안

상이기장령 전부개정령안

상이기장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헌신영예기장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투 등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헌신을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해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등) ① 헌신영예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전투 또는 특수직무에 해당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되, 그 제식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 또는 특수직무에 해당되는 직무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3조(증서) 기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 기장증을 교부한다.

제4조(수여권자) 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다만, 군인, 군무원 또는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촉하여 시행하게 한다.

제5조(패용) 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상이기장령」에 따라 행한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헌신영예기장)]



약장(군복용)



약장(사복용)



1. 수-적 1조 2cm,
담청색 2조 1.4cm
백 2조 0.2cm
3각-세로 4.6cm, 가로 3.6cm

2. 치수-세로 3.9cm, 가로 3.9cm

3. 앞면-1. 도검(은색)
2. 월계관(금색)
3. 별(은색) - □형
4. 적십자(적색)
5. 태극(원색)

4. 뒷면-대한민국헌신영예기장

1. 적1조-2cm(중양)
2. 담청색-1.4cm(좌우)
3. 백2조-0.2cm(적조 좌우)
4. 세로 1.1cm, 가로 3.6cm

1. 치수-세로 1.8cm, 가로 1.8cm

* 기장의 정장 제식 축약

[별지 서식]

제 호

헌신영예기장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에게 헌신영예기장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 방 부 장 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상이기장령	헌신영예기장령
제1조 (수요대상 및 종류) 상이기장은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자에게 수여하되, 이를 특별상이기장과 보통상이기장의 2종으로 나눈다. 제2조 (특별상이기장의 대상) 특별상이기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자에게 수여하되, 그 제식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3조 (보통상이기장의 대상) 보통상이기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자에게 수여하되, 그 제식은 별표 제2호와 같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투 등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헌신을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해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등) ① 헌신영예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전투 또는 특수직무에 해당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되, 그 제식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 또는 특수직무에 해당되는 직무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준용한다. 〈삭제〉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 (증서) 상이기장을 받는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제5조 (수여권자) 상이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다만, 경찰관 기타 문관과 일반인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위촉하여 시행하게 한다. 제6조(패용) 상이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패용) 상이기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이를 패용하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증서) 기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 기장증을 교부한다. 제4조(수여권자) 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다만, 군인, 군무원 또는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촉하여 시행하게 한다. 〈삭제〉 제5조(패용) 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별표 제1호(특별상이기장)] [별표 제1호(특별상이기장)] 정 장  1. 지급-양은 2. 치수-지름 4cm 3. 표면-1. 별-양은 2. 적십자(적색) 3. 태극(원색) 4. 도검(청색) 4. 이면-대한민국특별상이기장 제 호 5. 포수-없음	<삭제>				
[별표 제2호(보통상이기장)] [별표 제2호(보통상이기장)]  1. 지급-양은 2. 치수-지름 4cm 3. 앞표면-1. 별-양은 □형 2. 적십자(적색) 3. 태극(원색) 4. 이면-대한민국상이기장 제 호 5. 포수-적 1조 2cm, 담청색 2조 1.4cm 백 2조 0.2cm 세로 4.6cm 가로 3.6cm) 3각 약 장 1. 적1조-2cm(중앙) 2. 담청색-1.4cm(좌우) 3. 백2조-0.2cm(적조 좌우) 4. { 세로 1.1cm 가로 3.6cm	[별표 (헌신영예기장)] [별표 (헌신영예기장)]  1. 수-적 1조 2cm, 담청색 2조 1.4cm 백 2조 0.2cm 3각-세로 4.6cm, 가로 3.6cm 2. 치수-세로 3.9cm, 가로 3.9cm 3. 앞면-1. 도검(은색) 2. 월계관(금색) 3. 별(은색) - □형 4. 적십자(적색) 5. 태극(원색) 4. 뒷면-대한민국헌신영예기장 약장(군복용) 1. 적1조-2cm(중앙) 2. 담청색-1.4cm(좌우) 3. 백2조-0.2cm(적조 좌우) 4. 세로 1.1cm, 가로 3.6cm 약장(사복용) 1. 치수-세로 1.8cm, 가로 1.8cm * 기장의 경장 제식 축약				
[별지 서식]	[별지 서식]				
제 호 상이기장수여증서 특별상이기장 제 호 보통상이기장 제 호 성 명 년 월 일생 위의 상이기장을 수여함 년 월 일 국방부장관 (성명) 직인	제 호 헌신영예기장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에게 헌신영예기장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 방 부 장 관 직인				
이 면 <table><tr><td>기인및 증 상</td><td>년 월 일 전투에서 상창을 의 장해를 받음</td></tr><tr><td>주 의</td><td>1. 상이기장을 패용증은 반드시 이 증서를 휴대할 것 2. 전속 또는 거주지변경시는 4일이내에 그 취지를 소속부대 또는 소관 경찰서에 신고할 것 3. 기장 및 이 증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군방 헌병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할 것</td></tr></table>	기인및 증 상	년 월 일 전투에서 상창을 의 장해를 받음	주 의	1. 상이기장을 패용증은 반드시 이 증서를 휴대할 것 2. 전속 또는 거주지변경시는 4일이내에 그 취지를 소속부대 또는 소관 경찰서에 신고할 것 3. 기장 및 이 증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군방 헌병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할 것	
기인및 증 상	년 월 일 전투에서 상창을 의 장해를 받음				
주 의	1. 상이기장을 패용증은 반드시 이 증서를 휴대할 것 2. 전속 또는 거주지변경시는 4일이내에 그 취지를 소속부대 또는 소관 경찰서에 신고할 것 3. 기장 및 이 증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군방 헌병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할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병영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154